2026. 10.

미국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의 선택·배열 주장에 관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결정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소장
김현숙

1. 개요

2026년 9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뎀보우 리딤(Dem Bow Riddim)'[1]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 리마스 뮤직(Rimas Music)과 배드 버니(Bad Bunny)의 재검토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Clevie Brwone, Steely의 유산 관리인 등이 주장한 음악적 요소의 선택·배열에 관하여 피고 측에 유리한 일부 약식판결을 하였다.[2] 법원은 문제된 리듬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보호를 구하는 조합이 어느 저작물에 구현되어 있는지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결정의 이유였다.

자메이카의 프로듀서 듀오 Steely & Clevie의 Cleveland "Clevie" Browne과 고(故) Wycliffe "Steely" Johnson은 1989년 연주곡 「Fish Market」을 작곡·녹음하였다. Clevie가 드럼과 타악기를, Steely가 베이스라인과 그 밖의 선율·화성 요소를 맡았다. 1990년 발표된 Shabba Ranks의 「Dem Bow」는 「Fish Market」과 같은 멀티트랙 반주 녹음에 보컬을 더한 곡이다. 같은 해 Ephraim Barrett(Count Shelly)과 Denis Halliburton이 발표한 「Pounder (Dub Mix II)」는 그 반주를 다시 연주한 녹음물로서 일부 선율과 보조 타악기 요소를 생략하였다.[3]

이 사건의 원고는 Clevie Browne, Steely의 유산관리인, 두 사람의 제작회사 Steely & Clevie Productions Ltd., 그리고 「Pounder (Dub Mix II)」의 제작에 관여한 Count Shelly의 유산관리인이다. 원고들은 「Fish Market」에 관하여는 음악저작물과 녹음물의 권리를 모두 주장하였으나, 「Dem Bow」에 관하여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만을, 「Pounder (Dub Mix II)」에 관하여는 녹음물의 권리만을 주장하였다.[4] 세 건의 소가 2021년 4월부터 차례로 제기되어 2022년 7월 병합되었다. 배드 버니, 드레이크, 제이 발빈을 비롯하여 100을 넘는 아티스트와 음악출판사가 피고가 되었다.[5] 법원은 사건 규모를 고려하여 창작성과

1) 리딤(riddim)은 레게 댄스홀 장르에서 보컬을 제외한 반주 트랙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힙합의 '비트(beat)'에 해당하며 하나의 리딤으로 여러 곡을 녹음할 수 있다(Cleveland Constantine Browne et al. v. Rodney Sebastian Clark et al., No. 2:21-cv-02840-AB-AJR, Order Granting in Part and Denying in Part Defendants' Motions to Dismiss Second Consolidated Amended Complaint, ECF No. 421 (C.D. Cal. May 28, 2024), p. 4 n.5(이하 "2024년 결정")). 음의 장단과 강약이 반복되는 흐름을 뜻하는 리듬(rhythm)과는 다르다.

2) Cleveland Constantine Browne et al. v. Rodney Sebastian Clark et al., No. 2:21-cv-02840-AB-AJR, Order Granting Rimas Defendants' Motion for Reconsideration, ECF No. 866 (C.D. Cal. Sept. 1, 2026)(이하 "대상결정").

3) 같은 사건, Order Regarding Motions for Summary Judgment and Daubert Motions, ECF No. 841 (C.D. Cal. July 1, 2026), p. 38(이하 "7월 결정").

4) 미국 저작권법상 별개의 저작물 유형이다(17 U.S.C. § 102(a)(2), (7); 7월 결정, p. 39).

5) David Grossman & Alexander Loh, "Browne v. Donalds", Loeb & Loeb LLP IP/Entertainment Case Law Updates, 2026. 9. 1. 결정 소개,

보호가능성을 먼저 심리하고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손해배상 등은 뒤로 미루는 단계별 심리계획을 채택하였다. 2024년 5월에는 음악적 요소나 그 조합의 보호 여부를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거쳐 판단할 문제로 보고 직접침해 청구에 대한 소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em Bow」나 「Pounder (Dub Mix II)」를 복제하였더라도 「Fish Market」의 보호되는 요소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면 「Fish Market」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도 보았다.[6)]

법원은 2026년 7월 1일 양측의 일부 약식판결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선행 작품과 장르의 관행은 신규성 심사가 아니라 보호되지 않는 요소를 걸러 내는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음악적 요소가 존재하는지, 그것이 관용적인지 창작적인지, 그 조합이 일관된 선택·배열을 이루는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하였으므로 약식판결 단계에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가릴 수 없다고 하였다.[7)] 이에 Rimas Music과 배드 버니는 7월 15일 재검토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요소를 모두 담은 작품은 없다는 것이다. 타악기인 팀발레스의 두 마디 리듬 패턴은 원고들이 녹음물의 권리만 주장하는 「Pounder (Dub Mix II)」에만 있고 그 곡에는 탬버린이 없으며, 소장의 악보도 「Fish Market」에서 서로 떨어진 두 마디를 이어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8월 14일 심리를 거쳐 9월 1일 신청을 인용하였다.

2. 주요내용

1) 사실판단에 앞서는 보호대상의 특정

법원은 7월 결정이 창작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대립을 다루었을 뿐, 원고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선택·배열이 어느 저작물에 구현되어 있는가라는 선결문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두 종류의 판단을 구별하면서, 특정 저작물에 어떤 음악적 요소가 있고 그것이 관용적인지 창작적인지는 배심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문제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의 범위를 어느 저작물이 정하는지는 그에 앞서 법원이 판단할 법률문제라고 하였다. 배심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설득력 있다고 여기는 요소들을 골라 저작권의 대상 자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는 없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범위가 유동적으로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2) 보호대상은 요소의 목록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배열

개별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라도 그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조합 전체가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요소들을 묶어 '조합'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Feist[8)], Satava[9)] 및 Skidmore[10)]

〈https://www.loeb.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9/browne-v-donalds〉 (2026. 9. 28. 검색).

6) 2024년 결정, pp. 18-19, 32-34. 기여침해·대위침해 청구는 보정을 허용하면서 각하하였다(p. 40). 이 단계는 박준우,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Dembow Riddim)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참조.

7) 원고들의 리듬에 저작권이 있다고 확정한 판단은 아니었다.

8)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358 (1991)

판결을 근거로, 보호대상은 예술적 요소들이 일관된 패턴이나 통합된 구성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주목한 제9연방항소법원의 Skidmore 판결은 작품 곳곳에 흩어진 유사점을 모으는 것과 작품에 구현된 창작적인 선택·배열을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다. 각 요소가 어떤 순서와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공통점만 나열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에 독점권을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대상결정은 그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작품에서 부분들을 추출한 뒤 소송 과정에서 새로 조합하고 이를 원래부터 존재하던 보호대상처럼 다룰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저작권법의 구조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제102조 (a)는 유형적 표현매체에 고정된 창작물을 보호하고,[11] 제101조의 편집저작물 정의도 기존 소재를 모아 만든 결과물 전체가 창작물일 것을 요구하며, 제103조 (b)는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보호를 기존 소재와 구별되는 저작자의 기여 부분으로 한정한다. 선택·배열의 보호를 주장하려면 그 조합이 구현된 식별 가능한 저작물이 있어야 하고, 서로 독립된 작품에서 뽑아낸 요소들의 추상적인 집합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이 사건에 대한 적용과 결정의 범위

원고들은 프로그램된 킥, 스네어, 하이햇, 탬버린, 합성 톰, 팀발레스 및 합성 베이스 패턴의 조합을 「Fish Market」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나타낸 두 마디 악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 악보에 표시된 완전한 선택·배열이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한 어느 하나의 저작물에 존재한다는 점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세 작품을 통틀어 설명하였을 뿐, 어느 작품의 어느 부분에 그 조합이 구현되어 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8월 심리에서 처음으로 두 마디 패턴 전체가 「Fish Market」에 존재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주장하였고, 다른 두 작품을 언급한 것은 거기에서 요소를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상당 부분 같은 선택·배열을 담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설명의 변화가 작품의 사실적 특성을 넘어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나아가 조합 전체가 「Fish Market」에 있다는 주장이라면 바로 그 작품에 구현된 배열이 분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한 작품에서 가져온 요소라도 원래의 맥락에서 떼어 내 새로 배열한 뒤 그 재구성된 조합을 보호대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7월 결정 가운데 피고의 일부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선택·배열 주장에 관하여 그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판단의 한계를 명시하였다. 문제된 리듬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창작적인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보호되는 선택·배열이 반드시 연속된 두 마디의 음악 구절(phrase)이어야

9) Satava v. Lowry, 323 F.3d 805, 811 (9th Cir. 2003)

10) Skidmore ex rel. Randy Craig Wolfe Trust v. Led Zeppelin, 952 F.3d 1051, 1074-76 (9th Cir. 2020) (en banc).

11)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a)와 달리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고정을 일반적인 보호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을 특정할 필요성은 참고할 수 있으나, 이를 고정 요건과 결부할 것은 아니다.

한다거나 2차적저작물이 창작성 증명과 무관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 두 마디 패턴 전체가 「Fish Market」에 있다는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이 옳은지도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개별 요소가 아니라 그 선택·배열을 근거로 음악저작물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녹음물 자체를 복제하였다는 주장은 별도로 남아 있다.[12]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남은 청구와 쟁점의 처리 일정을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하고 그 후 15일 이내에 심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대상결정은 음악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다툴 때 '얼마나 비슷한가'에 앞서 '무엇을 보호받으려 하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결정은 창작성의 기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 창작성과 침해를 판단하기에 앞서 보호를 주장하는 대상이 어느 저작물에 구현되어 있는지를 특정하도록 한 것이다. 창작적인 선택·배열의 보호가능성은 유지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요소들을 새로 조합하여 보호대상을 구성하는 주장만 배척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 가락·리듬·화성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은 가락을 중심으로 나머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사건에서는 다투어진 부분이 앞서 공표된 곡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화성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도라는 이유로 창작성을 부정하였다.[13] 대법원은 이미 특정된 부분의 창작성을 판단한 반면, 대상결정은 그에 앞서 보호를 주장하는 선택·배열이 어느 저작물에 구현되어 있는지를 다루었다. 다투어지는 부분의 창작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위 법리도 그 부분의 특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처럼 리듬과 타악기·베이스 패턴의 조합을 내세운다면 어느 저작물의 어느 부분에 그 조합이 구현되어 있는지부터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결정은 미국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 규정도 근거로 들었으나, 우리 대법원은 음악저작물 자체를 요소의 선택·배열로 파악하므로 한 곡 안의 요소 조합은 우리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제2조 제18호)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14]

음악저작물과 녹음물의 구별도 짚어 둘 만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을 저작물이 아닌 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 보호한다.[15] 규율 방식은 다르더라도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 특정 녹음에

12) 원고 측은 2025. 12. 19. 약식판결 심리에서 킥이나 하이햇 하나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으며 7개 요소 전체의 선택·배열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Rimas 피고들의 재검토 신청서, ECF No. 842, p. 11 n.3에서 재인용). 피고 측도 이 주장이 배척되면 녹음물 침해 청구가 남는다고 하였다(같은 문서, p. 2 n.1).

13)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14)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의 편집저작물(compilation)은 기존 소재·데이터의 선택·조정·배열로 결과물 전체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소재의 집합물인 편집물 가운데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보호한다(제2조 제17호·제18호, 제6조 제1항).

고정된 소리 자체를 복제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권리의 근거와 이용행위를 대응시켜야 한다는 점은 같다. 원곡에 없는 요소는 다른 음반의 음반제작자 권리를 가졌더라도 원곡의 선택·배열로 주장할 수 없다. 2024년 결정은 2차적저작물 중 원곡의 보호되는 요소에서 비롯된 부분을 복제하면 원곡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대상결정처럼 원곡에 구현된 표현을 보호범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 법에서도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조 제2항). 대상결정은 선택·배열 주장에 관한 판단이므로, 녹음물 자체를 복제하는 샘플링의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창작자와 권리자로서는 원곡과 리믹스, 재녹음 등 버전별로 권리관계와 음악적 차이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용자 역시 특정 장르의 관용적 리듬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창작자의 권리와 후속 창작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면 공유되는 음악적 재료와 특정 작품에 구현된 창작적 표현을 구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Cleveland Constantine Browne et al. v. Rodney Sebastian Clark et al., No. 2:21-cv-02840-AB-AJR, ECF No. 866 (C.D. Cal. Sept. 1, 2026).
- Cleveland Constantine Browne et al. v. Rodney Sebastian Clark et al., No. 2:21-cv-02840-AB-AJR, ECF No. 421 (C.D. Cal. May 28, 2024).
- Cleveland Constantine Browne et al. v. Rodney Sebastian Clark et al., No. 2:21-cv-02840-AB-AJR, ECF No. 841 (C.D. Cal. July 1, 2026).
- Cleveland Constantine Browne et al. v. Rodney Sebastian Clark et al., No. 2:21-cv-02840-AB-AJR, ECF No. 842 (C.D. Cal. filed July 15, 2026).
- Skidmore ex rel. Randy Craig Wolfe Trust v. Led Zeppelin, 952 F.3d 1051 (9th Cir. 2020) (en banc).
- 박준우,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Dembow Riddim)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15)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5호),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음반제작자로 보호한다(제2조 제6호, 제78조 이하).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 자체의 창작성을 보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